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10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도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도금고 약정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 추가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도금고 약정기간 확대 (안 제5조)
 - 2년 → 3년 (1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안 제7조제1항, 제2항)
 - 심의 → 심의·평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안 제7조제3항)
 - 9명 이내 → 9명 이상 12명 이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신설 (안 제7조제5항)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금고지정 금융기관 지정통지 후 약정서 체결기간 연장 (안 제9조제2항)
 - 10일 이내 → 20일 이내 (10일 연장)

4. 검토의견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09. 6. 10)에 따라 예규와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금고 지정시 포괄적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으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에서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재무구조 안정성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 금고 약정체결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약정체결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함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를 현재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증원되면서 관계공무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음. 금융기관에 대한 객관적 심의평가를 위하여 금융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그룹을 많이 참여시키지 않고 관계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을 참여시키는 구성요건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정함에 따라 1개 금융기관이 최장 6년 동안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 신설되는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준수사항은 순위간 편차를 세세하게 균등배분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붙 임 :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시도별 금고약정기간 및 재지정 규정 현황

시도명	금고약정기간	재지정 규정 유무	비고
서울시	4년	1회	
부산시	4년	1회	
대구시	4년	1회	
인천시	4년	무	
광주시	미규정	1회	
대전시	3년	무	
울산시	3년	1회	
경기도	3년	재지정	
강원도	4년	1회	
충청북도	2년→ 3년	1회	
충청남도	4년	1회	
전라북도	4년	1회	
전라남도	2년	1회	
경상북도	3년	1회	
경상남도	3년	1회	
제주도	2년	무	